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8648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3. 16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

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·백화점·시장·의료시설·숙박업소·공장·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
(안 제4조제1항)

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·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

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.

나.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(안 제5조제4항)

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,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.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명피해”를 “인명 및 재산피해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”을 “특약부화재보험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그 건물”을 “그 특수건물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이 경우 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특수건물”을 “특수건물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제4조제1항”을 “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”으로, “건물에”를 “특수건물에”로, “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(이하 “특약부화재보험”이라 한다)”을 “특약부화재보험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손해배상책임”을 “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”을 “특수건물

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, “내에”를 “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특약부화재보험계약”을 “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사망의 경우: 피해자 1명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나.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다.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: 화재 1건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제9조 중 “제8조”를 “제8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”을 “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장으로”를 “원장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

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 복구와 <u>인명피해</u>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</u>”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적용 지역)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<u>그 건물</u>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인명 및 재산피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특약부화재보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제4조(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----- -- <u>그 특수건물</u>----- ----- ----- <u>때 또는 다른 사람의</u></p>

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(輕過失)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략)

제5조(보험 가입의 의무)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(이하 “특약부화재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업원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

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

. 이 경우 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건물의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보험 가입의 의무) ①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물에 특약부화재보험

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

입하여야 한다.

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험금액)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 략)

2.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3.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정하는 -- 이내에 --.

⑤ -----
--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-----.

제8조(보험금액) ①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사망의 경우: 피해자 1명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나.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다.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: 화재 1건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<삭 제>

② (생략)

제9조(보험금액의 청구)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압류의 금지)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제22조(보고와 검사)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,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·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험금액의 청구) -----

----- 제8조제1항
제2호-----
-----.

제10조(압류의 금지) -----
----- 손해배상
책임을 담보하는 보험-----
-----.

제22조(보고와 검사) ① -----

----- 원
장으로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